

#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092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13.

발의자 : 문진국 · 장석춘 · 김종대  
김석기 · 황주홍 · 성일종  
신상진 · 주광덕 · 김현아  
임이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.

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· 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 · 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안 제7조).

또한,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 설치를 회피함에 따라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·운용하는 사업자단체는 한군데도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임.

이에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).

##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“택시운수종사자단체”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제10조에 따라 설립·신고한 노동조합을 말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택시운송사업자”를 “택시운송사업자,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단체(이하 “택시운송사업자 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“택시운송사업자에게”를 “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”로 한다.

1의2.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

4의2. 서비스 교육,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

제8조제1항 중 “택시운송사업자는”을 “택시운송사업자 등은”으로 하 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택시운송사업자가”를 “택시운송사업자 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택시운송사업자가”를 “택시운송사업자 등이”

로, “택시운송사업자에게”를 “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택시운송사업자가”를 “택시운송사업자 등이”로 한다.  
제15조제1항 중 “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”을 “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	<p><u>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</u></p> <p>2. ~ 4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·도에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시·도가 제1항에 따라 <u>택시 운송사업자에게</u> 보조한 자금. 다만,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·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8조(보조금의 사용 등)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<u>택시운송사업자는</u>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</p>	<p><u>2. ~ 4.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4의2. 서비스 교육, 퇴직 운수 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택시 운송사업자 등에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보조금의 사용 등) ① ----- ----- <u>택시운송사업자 등은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/p>
--	---	---

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자  
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  
독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  
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  
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
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  
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 
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 
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 
의 설치 등) ① 「여객자동차  
운수사업법」 제53조 또는 제5  
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  
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  
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  
종사자 복지기금(이하 이 조에  
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 
수 있다.

----- 택시운송사업자 등이 -----  
-----  
-----.

(3) -----  
----- 택시운송사업자 등이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택시운송사업자 등에  
----- 게 -----  
-----

④ 택시운송  
사업자 등이

제15조(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 
의 설치 등) ① -----  
----- 택시운송사업자단체  
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~ ⑤ (생략)

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